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104
----------	-----

제출년월일 : 2001. 11 13

제출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이 조례는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파주시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내구연한이 경과된 농기계구입자금 등으로 활용 (조례안 제4조, 제6조)
- 기금은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 관리 (조례안 제3조, 제5조)
- 기금운용계획 수립, 심의, 결산보고 등은 파주시농정심의회와 파주시 의회의 심의의결로 처리함 (조례안 제7조, 제8조, 제10조)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

제1조 (목적) 이조례는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임대사업이라 함은 시장이 농기계를 농가에 임대하여 농기계이용률의 제고와 농가부채의 상환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라 함은 시장이 농가에 임대할 목적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파주시 일반회계 출연금
2.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기타수입금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에 보전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임대농기계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재구입하기 위한 자금
2. 농기계안전사고에 대비한 종합공제가입비
3. 농기계의 운전 및 정비관리자에 대한 제비용

-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파주시농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영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임대농기계의 확대보급이 필요한 때에는 내구연한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농기계구입에 따른 총비용의 30퍼센트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출연 이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임대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산업국장
2. 기금출납원 : 유통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요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이전에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징수한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소관 실·과·소		농축산과 ☎ 940-4603
입안자	농축산과장	박신규
	유통담당	김영선
	담당자	이진홍

2001. 11. 21.(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

전 문 위 원 윤 명 체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

□ 제정이유

- 동 조례는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파주시 일반회계 출연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내구 연한이 경과된 농기계 구입자금등으로 활용 (안 제4조, 제6조)
-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 (안 제3조, 제5조)
- 기금운용계획수립, 심의 결산보고 등은 파주시 농정 심의회와 파주시의회의 심의 의결로 처리함 (안 제7조, 제8조, 제10조)

□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활동은 예산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안정적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토록 하고 있고 기금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어 법적 타당성에 문제가 없음
- 동 제정 조례안의 내용은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시달한 표준안을 따르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 우리시는 2000년부터 농가 임대 농기계를 구매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들의 내구 연한인 7년이 경과되기전 일정 규모의 기금의 조성이 긴요하다고 보아지며 내구 연한까지의 임대료 수입은 농기계 구매액의 70%로 예상되어 부족되는 30%의 추가 기금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그 소요액이 예측됨에도 구체적인 기금조성 목표액이 설정되지 않았으며 임대 농기계의 기종 또한 구체화하지 않고 “시장이 농가에 임대할 목적으로 구입한 농기계”로 정하고 있어 다양한 농기계중 특정 농기계의 구매 요구가 있을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임대용 농기계 구매내역]

계		273,158천 원
○ 농용트랙터	4대	95,884천 원
○ 부속작업기	12종	27,152천 원
○ 무논 정지기	4대	10,044천 원
○ 로타베이타	4대	8,200천 원
○ 비료살포기	4대	2,088천 원
○ 이랑쟁기	4대	5,830천 원
○ 사 다 리	1대	990천 원
○ 콤바인(콩수확기)	1 대	65,610천 원
○ 승용이앙기	3 대	29,145천 원
○ 콩 선별기	2 대	28,215천 원

○ 참고로 2001년도 말 기준 파주시 기금운용 현황은 체육진흥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인 전문인력육성기금 등 6종이며 기금 조성액은 총 42억 6,280만원 규모임

파주시 기금운용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00년말	2001년 운용			2001년말 현재(추정)
		수 입	지 출	잔 액	
계	3,224,379	1,516,729	478,307	1,038,422	4,262,801
체육진흥기금	882,099	279,868	34,115	245,753	1,127,852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986,328	182,103	70,200	111,903	1,098,231
노인복지기금	809,154	435,477	23,660	411,817	1,220,971
재해대책기금	376,941	481,538	350,332	131,206	508,147
재난관리기금	169,857	63,743	-	63,743	233,600
농업인전문인력 육성기금	-	74,000	-	74,000	74,000